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의 근거 마련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41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환경 개선의 근거 마련 ..	3
2. 시설물 자살시도방지체계의 구축	8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4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8. 4.

(3) 회 부 일 : 2026.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파산·실업, 경제적 빈곤,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 집단 따돌림, 고독·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

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덧붙여 건축·교량·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자목,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목적, 기본정책, 자살예방사업의 정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5호아목·자목,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생략) <신설>	제2조(기본정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 사.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아.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조의2(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자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의 발굴 및 개선</u> 자. <u>자살유발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 시행</u> 차. (현행 아목과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항¹⁾은 자살예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인의 자살 위험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예방적 대응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명시하고, 자살예방정책에 이러한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의 발굴·개선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시행을 자살예방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 2024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 현황을 보면, 자살은 개인의 정신과적 문제(35.4%)뿐 아니라 경제생활 문제(29.6%), 육체적·질병 문제(15.2%), 가정문제(4.7%)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자살 위험요인은 보건복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경제·주거·교육·노동 등 여러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복합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2024년 자살원인(동기)별 자살 현황 >

[단위: 명, %]

자살원인(동기)	자살사망자 수	비율
가정 문제	702	4.7
경제생활 문제	4,398	29.6
남녀 문제	295	2.0
사별 문제	149	1.0
육체적·질병 문제	2,258	15.2
정신과적 문제	5,254	35.4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487	3.3
학대 또는 폭력 문제	6	0.0
기타	552	3.7
미상	744	5.0
전체	14,845	100.0

자료: 경찰청, 변사자통계²⁾

□ 다만, 현행법³⁾에서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제1항),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조제2항제3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 근거가 마련(제24조의2)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 출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한국 자살현황(<https://kfsp-datazoom.or.kr/korea02.do>)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통하여도 일정 부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한편, 현행법에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나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와 같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⁴⁾가 마련되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제3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1., 시행일: 2026. 11. 12.]

2. 시설물 자살시도방지체계의 구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⁵⁾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과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시설물 자살시도방지 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 13. (생략)

	<u>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과 자살 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자살시도방지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2022년 12,906명, 2023년 13,978명, 2024년 14,87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살률⁶⁾ 역시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 2024년 29.1명으로 상승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20년~2024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살자 수	13,195	13,352	12,906	13,978	14,872
자살률	25.7	26.0	25.2	27.3	29.1

출처: 2020~2024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6)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 이와 같이 자살 문제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개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자살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살시도를 물리적으로 예방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적 개입도 자살예방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특히, 자살 시도 장소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특정 시설물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자살위험자의 자살시도를 방지하고, 자살 시도 이전에 상담·구조 등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물 자살 시도 방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응하여 자살 예방정책의 수단을 다각화하고, 자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7)에 따라 수립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년~‘27년)⁸⁾에서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자살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자살 다빈도 장소를 추출하여 지속관리하는 내용의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를 포함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전국 14개 시·도⁹⁾ 광역 자살예방센터에 총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8)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계획으로, 2021년 26.0명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9)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이외 14개 시·도에서 추진 중(‘추락’ 분야는 6개 시·도 추진)

일산화탄소 중독, 농약, 추락(교량 등) 중 지역별 분야를 선택하여 맞춤형 지원하는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¹⁰⁾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정준호의원안(제2203196호),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안(제2205935호)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노력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 제14조의2의 경우 자살의 빈도가 높은 장소인 교량 등의 건축물 관리의 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안성시) 안 제4조제3항 중 ‘자살유발정보’ 부분은 정보통신망 및 미디어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업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모니터링 조치 의무는 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명확히 분리하거나 삭제하는 보완 필요

문 의 처

02)6788-5498
